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34호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02호 도시계획시설(검단15호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05호 도시계획시설(효성문화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안) 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12호 도시계획시설(원신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13호 도시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17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39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4호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34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02호

도시계획시설(검단15호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검단15호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4)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0. 4.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2) 명 칭 : 검단15호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초 결정일
최초	검단15호 근린공원	도시 공원	96,500	-	96,500	-	1998.06.12. (인고 118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계양공원사업소, 서구청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21,166	96,500							
1	왕길동	33-9	임	256.0	256.0	김○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					
2	왕길동	33-11	임	193.0	193.0	황○수	서울 강서구 공항동 ○	99 /193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양○희	서울 동작구 사당동 ○	94 /193				
3	왕길동	34-4	임	6,411.0	1,798.6	소○숙	인천 계양구 효성동 ○					
4	왕길동	99-4	전	354.0	77.8	윤○호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길 ○					
5	왕길동	99-11	전	167.0	161.9	이○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 새마을금고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	근저당권/ 지상권	
6	왕길동	101-19	잡	5,129.0	5,129.0	국방부						
7	왕길동	101-20	잡	457.0	457.0	국방부						
8	왕길동	101-21	임	3,201.0	3,201.0	국방부						
9	왕길동	101-23	임	1,270.0	1,001.9	김○수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62번길○		국	(북인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10	왕길동	106-13	임	724.0	724.0	김○철	인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	근저당권	
11	왕길동	산16-2	임	6,116.0	6,116.0	강○광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8길 ○	1/6				
						강○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6				
						○금○리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8길 ○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강○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1/6					
						강○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36길○	1/6					
						강○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	1/6					
12	왕길동	산16-5	임	6,534.0	6,534.0	인천광역시							
13	왕길동	산16-7	임	67.0	67.0	인천광역시							
14	왕길동	산17-5	임	138.0	138.0	인천광역시							
15	왕길동	산19-1	임	8,760.0	8,760.0	인천광역시	오○용	인천 동구 금곡동 ○	1/2				
							오○복	서울 중구 신당동 ○	1/4				
							오○선	서울 강남구 수서동 ○	1/4				
16	왕길동	산19-2	임	2,513.0	2,513.0	인천광역시	오○용	인천 동구 금곡동 ○	1/2				
							오○복	서울 중구 신당동 ○	1/4				
							오○선	서울 강남구 수서동 ○	1/4				
17	왕길동	산19-3	임	397.0	303.6	심○수	인천 서구 백석 ○		○농업협동 조합	인천 서구 가정로 ○	가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로 ○	압류		
									신○용	인천 남동구 논현동 ○	근저당권		
18	왕길동	산19-6	임	661.0	513.6	이○승	인천 계양 효성동 ○						
19	왕길동	산20	임	2,543.0	27.6	박○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20	왕길동	산20-1	임	333.0	202.1	박○옥	인천 남동 간석 ○						
21	왕길동	산21	임	5,306.0	261.7	임○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		○ 농업협동조합	인천 동구 셋골로 ○	근저당권		
22	왕길동	산23	임	8,926.0	4,124.9	문○찬	경기 부천 중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23	왕길동	산25	임	1,983.0	725.3	이○수	인천 연수 옥련동 ○	1/2				
						이○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1/2				
24	왕길동	산27-1	임	40,105.0	35,924.8	산림청						
25	왕길동	산27-12	임	1,332.0	1,332.0	산림청						
26	왕길동	산65	임	1,785.0	1,089.3	신○례	인천 남구 주안동 ○					
27	왕길동	산66	임	5,483.0	5,019.3	이○섭	서울 양천구 중앙로32길 ○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지상권	
28	왕길동	산73-2	임	2,221.0	2,221.0	김○성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					
29	왕길동	산73-6	임	884.0	884.0	최○옥	인천 북구 부평동 ○					
30	왕길동	산73-11	임	757.0	753.2	최○옥	인천 북구 부평동 ○					
31	왕길동	산74-2	임	1,967.0	1,967.0	박○영	인천 서구 원당대로 ○					
32	왕길동	산74-3	임	3,410.0	3,410.0	인천광역시						
33	왕길동	산75	임	171.0	171.0	황○오	인천 남구 주안동 ○					
24	왕길동	산75-1	임	127.0	127.0	인천광역시						
35	왕길동	산76-11	임	292.0	292.0	인천광역시						
36	왕길동	660	구	193.0	22.4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05호

도시계획시설(효성문화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안)

도시계획시설(효성문화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7), 계양구청(공원녹지과 ☎ 032-450-683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문화공원)
- 2) 명 칭 : 효성문화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신설	효 성 문화공원	공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4-4번지 일원	8017.5	8017.5	없음	2016. 7.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58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풍산특수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갑식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57(효성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효성문화공원 조성 공사” 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8.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사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11,471.8	8,017.5							
1	계양구	효성동	324-1	대	1,737.3	1,273.5	○○특수금융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효성동)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2	계양구	효성동	324-2	대	2,840.3	2,522.7	○○특수금융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효성동)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3	계양구	효성동	324-4	대	6,894.2	4,221.3	○○특수금융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효성동)	1/1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12호

도시계획시설(원신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원신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2) 명 칭 :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	그간 조성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초 결정일
최초	원신 근린공원	도시 공원	178,531	99,442 (도로 중복 27,200)	79,089	-	1966.08.31. (건고 2701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서구청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88,417	79,089							
1	석남동	산117-5	임야	2,805	2,805	이○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1/1				
2	석남동	산117-19	임야	3,889	3,889	인천광역시		1/1				
3	신현동	산34-2	임야	6,545	6,545	서○현	인천 남동구 만수동 ○	1/1				
4	신현동	산34-3	도로	8,487	3.71	인천광역시		1/1				
5	신현동	산34-5	임야	8,880	8,880	김○찬	인천 서구 마전동 ○	1/1				
6	신현동	산34-7	임야	16,250	16,250	김○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42/840				
						김○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2/840				
						마○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	42/840				
						마○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	42/840				
						변○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42/840				
						변○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	42/840				
						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28/840				
						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28/840				
						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28/840				
						이○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	42/840				
						이○은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	42/840				
						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	60/840	국 (용산세무서)		근저당	
						정○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15/840				
						정○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길○	60/840	국 (용산세무서)		근저당	
정○선	미국 뉴욕 ○ 알몬크 콜구역 ○	60/840	국 (용산세무서)		근저당							
정○원	미국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	60/840	국 (용산세무서)		근저당							
정○호	미국 캘리포니아 ○ 베릴 가 ○	60/840	국 (용산세무서)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정○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	30/840				
						정○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15/840				
						정○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15/840				
						정○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	30/840				
						조○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15/840				
7	신현동	산34-8	임야	6,107	6,107	서○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1/2				
						송○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1/2				
8	신현동	산34-10	도로	213	17.12	인천광역시		1/1				
9	신현동	산34-13	도로	127	127	인천광역시		1/1				
10	신현동	산34-14	도로	615	28.8	인천광역시		1/1				
11	신현동	산34-16	임야	10	10	인천광역시		1/1				
12	신현동	산34-19	임야	2,497	2,497	인천광역시		1/1				
13	신현동	산34-20	임야	1,522	1,522	인천광역시		1/1				
14	신현동	산34-21	임야	884	884	인천광역시		1/1				
15	신현동	산34-22	도로	22	22	인천광역시		1/1				
16	신현동	232-12	임야	859	859	인천광역시 서구		1/1				
17	신현동	232-14	도로	151	151	인천광역시		1/1				
18	원창동	202-8	잡종지	5	5	임○남	서울 양천구 목동○	1/1				
19	원창동	202-9	도로	7	7	국토교통부		1/1				
20	원창동	202-10	도로	9	9	국토교통부		1/1				
21	원창동	202-11	도로	21	21	국토교통부		1/1				
22	원창동	89	전	605	605	재단법인○ 통일○재단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	1/1				
						권○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1/3				
23	원창동	90-1	전	105	105	안○복	서울 중구 충무로3가 ○	1/3				
						안○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	1/3				
24	원창동	90-2	전	17	17	안○복	서울 중구 충무로3가 ○	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안○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	1/3				
						임○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	1/3				
25	원창동	90-3	전	6	6	안○복	서울 중구 충무로3가 ○	1/3				
						안○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	1/3				
						임○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3				
26	원창동	92-2	전	214	21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	1/1				
27	원창동	92-4	전	1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	1/1				
28	원창동	92-5	전	2	2	인천광역시 서구		1/1				
29	원창동	93-15	전	2,108	2,045.37	인천광역시 서구		1/1				
30	원창동	93-16	전	146	146	인천광역시 서구		1/1				
31	원창동	93-17	임야	51	51	인천광역시 서구		1/1				
32	원창동	93-18	전	24	24	기획재정부		1/1				
33	원창동	93-19	전	1,374	1,374	기획재정부		1/1				
34	원창동	93-20	전	2	2	인천광역시 서구		1/1				
35	원창동	93-21	전	587	587	인천광역시 서구		1/1				
36	원창동	93-23	임야	708	708	재단법인○ 통일○재단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	1/1				
37	원창동	95-2	전	853	85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	1/1				
38	원창동	산59-2	임야	8,977	8,977	김○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	7801/ 11702				
						백○규	인천 중구 경동 ○	3901/ 11702				
39	원창동	산59-6	임야	1	1	인천광역시 서구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40	원창동	산59-7	임야	383	383	인천광역시 서구		1/1				
41	원창동	산60-1	임야	1,261	1,261	임○남	서울 양천구 목동 ○	1/1				
42	원창동	산61	임야	2,551	2,551	인천광역시 서구		1/1				
43	원창동	산61-2	임야	3,133	3,133	강○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	1/1				
44	원창동	산61-3	임야	59	59	인천광역시 서구		1/1				
45	원창동	산61-4	임야	390	390	인천광역시 서구		1/1				
46	원창동	산62	임야	333	333	이○영	인천 남구 소성로 ○	1/1	국 (인천세무서)		압류	
									○카드 주식회사		가압류	
									주식회사 ○전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	근저당	
47	원창동	산62-2	임야	230	230	재단법인○ 통일○재단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	1/1				
48	원창동	산62-3	임야	15	15	이○영	인천 남구 학익동 ○	1/1	국 (인천세무서)		압류	
49	원창동	산63	임야	1,893	1,893	산림청		273/455				
						남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28/455				
						여○훈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	14/455				
						여○훈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	14/455				
						이○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28/455				
						정○숙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12/455	○유동회전문 유한회사		가압류	
						조○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8/455				
						조○희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28/455				
						조○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8/455				
조○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42/455										
50	원창동	산63-2	임야	1,366	1,366	산림청		273/45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중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 ○	28/455				
						여○훈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	14/455				
						여○훈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	14/455				
						이○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28/455				
						정○숙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12/455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가압류	
						조○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8/455				
						조○희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28/455				
						조○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8/455				
						조○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42/455				
51	원창동	산63-3	임야	47	47	산림청		273/455				
						남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28/455				
						여○훈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	14/455				
						여○훈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29번길 ○	14/455				
						이○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28/455				
						정○숙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12/455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가압류	
						조○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8/455				
						조○희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28/455				
						조○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	8/455				
조○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42/455										
52	원창동	산64-3	임야	2	2	문○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	1/4				
						박○생	광주시 서구 내방동 ○	1/4				
						오○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 ○	1/4				
						정○용	서울 은평구 녹번동 ○	1/4				
53	원창동	산64-4	임야	1,068	1,068	문○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	1/4				
						박○생	광주시 서구 내방동 ○	1/4				
						오○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 ○	1/4				
						정○용	서울 은평구 녹번동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013호

도시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산림공원과 ☎ 032-930-3459),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산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초 결정일
최초	남산 근린공원	도시 공원	462,044	-	103,240	358,804	1972.08.25. (건고 380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강화군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103,240.0	103,240.0			1/1				
1	강화읍	신문리	산 3	임	397.0	397.0	성○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	1/1				
2	강화읍	신문리	산 4-1	임	1,348.0	1,348.0	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3	강화읍	신문리	산 5-3	임	1,983.0	1,983.0	인천광역시 (교육감)		1/1				
4	강화읍	신문리	산 5-6	임	2,281.0	2,281.0	인천광역시 (교육감)		1/1				
5	강화읍	신문리	산 5-7	임	1,135.0	1,135.0	인천광역시 (교육감)		1/1				
6	강화읍	신문리	산 6-1	임	1,405.0	1,405.0	강화군		1/1				
7	강화읍	신문리	산 6-3	임	60.0	60.0	이○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36번길 ○	1/1	○새마을금 고	강화읍 관청리○	근저당권 지상권	
8	강화읍	신문리	산 7-3	임	456.0	456.0	강화군		1/1				
9	강화읍	신문리	산 7-4	임	2,135.0	2,135.0	강화군		1/1				
10	강화읍	신문리	산 8-2	임	1,900.0	1,900.0	강화군		1/1				
11	강화읍	신문리	산 9-2	임	598.0	598.0	강화군		1/1				
12	강화읍	신문리	산 11	임	1,785.0	1,785.0	강화군		1/1				
13	강화읍	신문리	산 12	임	1,289.0	1,289.0	윤○민	서울 마포구 신수동 ○	10/13	신○남	강화읍 관청리○	근저당권	
							강화군		3/13				
14	강화읍	신문리	산 13-2	임	1,190.0	1,190.0	강화군		1/1				
15	강화읍	신문리	산 14-2	임	3,304.0	3,304.0	국(산림청)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6	강화읍	신문리	산 14-3	임	1,407.0	1,407.0	국(산림청)		1/1				
17	강화읍	신문리	산 14-4	임	141.0	141.0	국(산림청)		1/1				
18	강화읍	신문리	산 14-5	임	1,620.0	1,620.0	국(산림청)		1/1				
19	강화읍	신문리	375-1	대	11.0	11.0	강화군		1/1				
20	강화읍	신문리	382-3	대	65.0	65.0	강화군		1/1				
21	강화읍	신문리	387-1	대	80.0	80.0	국(기획재정부)		1/1				
22	강화읍	신문리	395-1	전	8.0	8.0	김○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	1/1	○농업 협동조합	강화읍 중앙로○	근저당권 지상권	
23	강화읍	신문리	395-2	전	204.0	204.0	김○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	1/1	○농업 협동조합	강화읍 중앙로○	근저당권 지상권	
24	강화읍	신문리	397-4	전	420.0	420.0	강화군		1/1				
25	강화읍	신문리	397-7	전	150.0	150.0	강화군		1/1				
26	강화읍	신문리	398-1	전	560.0	560.0	장○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1				
27	강화읍	신문리	399-1	전	1,237.0	1,237.0	강화군		1/1				
28	강화읍	신문리	400-1	전	300.0	300.0	배○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1				
29	강화읍	신문리	403-1	대	45.0	45.0	강화군		1/1				
30	강화읍	신문리	410-4	전	969.0	969.0	김○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2길 ○	1/1	○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근저당권 설정	
31	강화읍	신문리	411-1	전	1,406.0	1,406.0	김○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2길 ○	1/1				
32	강화읍	신문리	412-1	전	1,341.0	1,341.0	강화군		1/1				
33	강화읍	신문리	413-2	전	1,134.0	1,134.0	강화군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34	강화읍	신문리	413-5	전	547.0	547.0	강화군		1/1				
35	강화읍	신문리	413-6	전	329.0	329.0	강화군		1/1				
36	강화읍	신문리	414-2	전	73.0	73.0	강화군		1/1				
37	강화읍	신문리	415	전	1,505.0	1,505.0	강화군		1/1				
38	강화읍	신문리	416	전	513.0	513.0	강화군		1/1				
39	강화읍	신문리	416-1	대	174.0	174.0	강화군		1/1				
40	강화읍	신문리	416-2	대	219.0	219.0	성○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1/1				
41	강화읍	신문리	417-1	전	1,284.0	1,284.0	황○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길31번길 ○	1/2				
							변○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길31번길 ○	1/2				
42	강화읍	신문리	418	전	258.0	258.0	강화군		1/1				
43	강화읍	신문리	419-1	전	150.0	150.0	강화군		1/1				
44	강화읍	신문리	420	전	1,260.0	1,260.0	강화군		1/1				
45	강화읍	신문리	421-1	전	832.0	832.0	강화군		1/1				
46	강화읍	신문리	439-6	전	1,823.0	1,823.0	황○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길31번길 ○	1/2				
							변○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길31번길 ○	1/2				
47	강화읍	신문리	440-3	전	1,675.0	1,675.0	강화군		1/1				
48	강화읍	신문리	470-2	대	15.0	15.0	주○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1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변○섭	서울 구로구 개봉동○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국	김포세무서	압류	
											○뱅크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근저당권	
49	강화읍	신문리	472-3	대	21.0	21.0	강화군		1/1					
50	강화읍	신문리	472-4	대	39.0	39.0	강화군		1/1					
51	강화읍	신문리	473-1	대	13.0	13.0	강화군		1/1					
52	강화읍	신문리	473-2	대	17.0	17.0	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	1/1					
53	강화읍	신문리	473-3	대	357.0	357.0	김○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물 ○	1/1					
54	강화읍	신문리	474-1	대	729.0	729.0	강화군		1/1					
55	강화읍	신문리	475	전	820.0	820.0	강화군		1/1					
56	강화읍	신문리	476-3	대	234.0	234.0	최○현							
							윤○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						
							홍○섭							
57	강화읍	신문리	477-3	전	335.0	335.0	강화군		1/1					
58	강화읍	신문리	477-4	전	3,023.0	3,023.0	국(기획재정부)		1/1					
59	강화읍	신문리	478-1	전	587.0	587.0	강화군		1/1					
60	강화읍	신문리	479-3	전	1,359.0	1,359.0	성○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	1/1					
61	강화읍	신문리	479-4	전	66.0	66.0	종○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62	강화읍	신문리	479-5	대	10.0	10.0	강화군		1/1				
63	강화읍	신문리	479-6	대	141.0	141.0	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	1/1				
64	강화읍	신문리	480-3	전	243.0	243.0	정○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한일길 ○	1/1				
65	강화읍	신문리	482-15	전	1,303.0	1,303.0	강화군		1/1				
66	강화읍	신문리	482-21	임	35.0	35.0	이○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				
67	강화읍	신문리	504-9	전	272.0	272.0	강화군		1/1				
68	강화읍	신문리	505-1	전	268.0	268.0	강화군		1/1				
69	강화읍	신문리	505-2	대	43.0	43.0	강화군		1/1				
70	강화읍	신문리	505-3	대	188.0	188.0	강화군		1/1				
71	강화읍	신문리	506-1	전	2,013.0	2,013.0	강화군		1/1				
72	강화읍	신문리	506-2	대	136.0	136.0	강화군		1/1				
73	강화읍	신문리	507	전	3,669.0	3,669.0	강화군		1/1				
74	강화읍	신문리	507-2	전	2,188.0	2,188.0	인천광역시 (교육감)		1/1				
75	강화읍	신문리	508	전	2,271.0	2,271.0	강○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1/1	○농업 협동조합	강화읍 중앙로 ○	근저당권 지상권	
76	강화읍	신문리	509-2	전	843.0	843.0	강화군		1/1				
77	강화읍	신문리	509-5	전	97.0	97.0	강화군		1/1				
78	강화읍	신문리	512-1	전	918.0	918.0	대한불교 조계종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3/4	김○옥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가처분	
							용○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79	강화읍	신문리	513	전	922.0	922.0	강○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1/1	○농업 협동조합	강화읍 중앙로 ○	근저당권 지상권	
80	강화읍	신문리	514	전	1,197.0	1,197.0	강화군		1/1				
81	강화읍	신문리	515	전	2,083.0	2,083.0	강화군		1/1				
82	강화읍	신문리	517	전	238.0	238.0	강화군		1/1				
83	강화읍	신문리	519	전	2,757.0	2,757.0	강화군		1/1				
84	강화읍	신문리	520	전	99.0	99.0	강화군		1/1				
85	강화읍	신문리	521	전	324.0	324.0	강화군		1/1				
86	강화읍	신문리	522-16	전	2.0	2.0	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36번길 ○	1/1	○새마을금고	강화읍 강화대로 ○	근저당권	
87	강화읍	신문리	522-17	전	1,785.0	1,785.0	강화군		1/1				
88	강화읍	신문리	523	전	595.0	595.0	강화군		1/1				
89	강화읍	신문리	524-5	대	576.0	576.0	강화군		1/1				
90	강화읍	신문리	640-3	전	2,142.0	2,142.0	강화군		1/1				
91	강화읍	신문리	640-4	전	1,252.0	1,252.0	강화군		1/1				
92	강화읍	신문리	645-1	전	1,952.0	1,952.0	강화군		1/1				
93	강화읍	신문리	646	전	760.0	760.0	강화군		1/1				
94	강화읍	신문리	669-1	전	9.0	9.0	김○식		1/1				
95	강화읍	신문리	670-2	전	4,378.0	4,378.0	이○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6				
							이○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6				
							이○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6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3/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96	강화읍	신문리	670-3	대	87.0	87.0	박○숙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	1/1				
97	강화읍	신문리	671	전	231.0	231.0	이○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1/1				
98	강화읍	신문리	672-43	임	2,730.0	2,730.0	강화군		1/1				
99	강화읍	신문리	673-1	전	1,042.0	1,042.0	강화군		1/1				
100	강화읍	신문리	674	전	909.0	909.0	김○돈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	1/1				
101	강화읍	신문리	675	전	1,554.0	1,554.0	조○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2				
							허○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2				
102	강화읍	신문리	676	대	1,187.0	1,187.0	강화군		1/1				
103	강화읍	신문리	677	대	625.0	625.0	조○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2				
							허○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2				
104	강화읍	신문리	678-1	임	536.0	536.0	강화군		1/1				
105	강화읍	신문리	679	전	3,876.0	3,876.0	강화군		1/1				
106	강화읍	신문리	679-1	대	303.0	303.0	전○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	1/1				
107	강화읍	신문리	679-2	대	357.0	357.0	강화군		1/1				
108	강화읍	신문리	685-41	천	16.0	16.0	국(국토해양부)		1/1				
109	강화읍	신문리	685-83	천	13.0	13.0	국(국토해양부)		1/1				
110	강화읍	신문리	685-97	천	79.0	79.0	국(국토해양부)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	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11	강화읍	신문리	685-98	천	1,462.0	1,462.0	국(국토해양부)		1/1				
112	강화읍	신문리	685-100	천	5.0	5.0	국(국토해양부)		1/1				
113	강화읍	신문리	685-101	천	183.0	183.0	국(국토해양부)		1/1				
114	강화읍	신문리	685-102	천	720.0	720.0	국(국토해양부)		1/1				
115	강화읍	신문리	687-95	대	8.0	8.0	국(기획재정부)		1/1				
116	강화읍	신문리	687-161	도	180.0	180.0	국(국토해양부)		1/1				
117	강화읍	신문리	687-162	도	20.0	20.0	국(국토해양부)		1/1				
118	강화읍	신문리	687-163	도	28.0	28.0	국(국토해양부)		1/1				
119	강화읍	신문리	693-1	도	60.0	60.0	국(국토해양부)		1/1				
120	강화읍	신문리	734-7	도	699.0	699.0	국(국토해양부)		1/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0-39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 2020. 2. 1.)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고,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조사단원 조정 및 사고수습 시 유가족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조사단원 구체적 명시·삭제. (안 제5조)
- 나. 사고수습대책본부의 유가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소방항공대,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 전화: 032-870-3417, 팩스: 032-752-11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본부 특수구조대”를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단원 및 간사는”을 “조사단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다.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라. 다른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조사 경험에 있는 사람

제6조제2항 중 “응급조치”를 “초동조치”로 한다.

제7조의 제목“(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조사보고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7일 이내에 초안, 15일”을 “15일”로 한다.

제8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항공구조구급대의 설치) 소방본부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u>소방본부 특수구조대</u>에 인천광역시항공구조구급대(이하“항공대”)를 설치한다.</p>	<p>제2조(항공구조구급대의 설치) --- ----- -----<u>소방</u> <u>본부 119특수구조단</u>----- ----- --.</p>
<p>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p>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감독</u></p> <p style="margin-left: 20px;">다. ~ 사. (생략)</p> <p>2. (생략)</p>	<p>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 ----- ----- -----.</p> <p>1. ----- ----- -----.</p> <p style="margin-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u></p> <p style="margin-left: 20px;">다. ~ 사.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 ② (생략)</p> <p>③ 조사단은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u>조사단원 및 간사는</u>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조사단원</p> <p style="margin-left: 20px;">가.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나.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p>	<p>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조사단원</u> <u>은</u>----- -----.</p> <p>1. ----- 가.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나. --- <u>항공정비사</u> -----</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

제2장 항공구조구급대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중앙 119구조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중앙119구조본부의 운항통제관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업무) 항공대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청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호의 항공기사고(시·도 항공기사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항공통신과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통신과 항공안전계장 또는 항공안전담당
2.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팀장
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관계 법령

관계 법령	<p>1. 통제관, 관계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p> <p>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p> <p>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p> <p>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p> <p>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p> <p>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p> <p>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p> <p>제9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소방청장은 시·도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고의 수습)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4호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향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향교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교활성화를 지원함(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다.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취사항)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보호법 ○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취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및 향교 석전대제 지원, 향교 명륜학당 운영 지원, 향교기로연 재현 등의 사업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재과장 백민숙